

제259회 임시국회
재정경제위원회

이 자료는 4월 7일 10시 이후 사용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最近 經濟動向 및 推進 課題

2006. 4. 7

財 政 經 濟 部

目 次

I. 최근 경제동향 / 1

1. 세계경제 동향 / 1
2. 국내경제 동향 / 2
3. 정책대응 방향 / 4

II. 주요 추진 과제 현황 / 6

1. 한·미 FTA 추진 / 6
2. 부동산 시장의 안정 / 9
3.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/ 11
4.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추진 / 13
5. 재정제도의 선진화·효율화 / 15
6. 양극화 대응 노력 강화 / 17
7. 근로소득지원세제(EITC) 도입 추진 / 18
8. 외환시장의 안정 / 19

별첨 : 4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 법안

I. 최근 경제동향

1. 세계경제 동향

□ (미국) 2005년 4분기 성장률이 낮아졌으나 금년 들어 생산·고용 등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

○ 다만, 신규주택판매 감소 등 주택경기는 둔화되는 모습

- * 성장률(전기비연율,%) : (05.1/4)3.8→(2/4)3.3→(3/4)4.1→(4/4)1.7
- * 산업생산(전월비,%) : (05.10)1.1→(11)0.9→(12)1.0→(06.1)△0.3→(2)0.7
- * 비농업신규고용(전월비,만명) : (05.10)4→(11)35→(12)15→(06.1)17→(2)24
- * 신규주택판매(전기비연율,%) : (05.11)△8.0→(12)3.1→(06.1)△5.3→(2)△10.5

□ (중국) 2005년 4분기 9.9%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며, 금년 들어 생산과 소비는 준절효과에 따른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

- * 성장률(전년동기비,%) : (05.1/4)9.9→(05.2/4)10.1→(3/4)9.8→(4/4)9.9
- * 소매판매(전년동기비,%) : (05.10)12.8→(11)12.4→(12)12.5→(06.1)15.5→(2)9.4
- * 산업생산(전년동기비,%) : (05.10)16.1→(11)16.6→(12)16.5→(06.1)9.8→(2)20.1

□ (일본) 수출호조세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

- * 성장률(전기비,%) : (05.1/4)1.3→(2/4)1.4→(3/4)0.2→(4/4)1.3
- * 수출(전년동기비,%) : (05.10)8.0→(11)14.7→(12)17.5→(06.1)13.5→(2)20.8
- * 광공업생산(전년동기비,%) : (05.10)3.0→(11)3.4→(12)3.7→(06.1)2.2→(2)3.7

□ (유로)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시현

- * 성장률(전기비,%) : (05.1/4)0.3→(2/4)0.4→(3/4)0.7→(4/4)0.3
- * 소매매출(전기비,%) : (05.10)0.3→(11)0.0→(12)△0.1→(06.1)0.8

2. 국내경제 동향

□ (민간소비) 2001~02년간의 과잉소비 조정과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회복세를 지속

* 민간소비(국민계정,%) : (04)△0.3→(05)3.2, (1/4)1.6→(2/4)3.0→(3/4)4.0→(4/4)4.2

* 소비재판매(%) : (04)△0.8→(05)3.9, (05.11)6.8→(12)9.6→(06.1)8.9→(2)11.1, (1~2)5.1

□ (투자)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, 회복세는 아직 미흡한 수준

* 설비투자(국민계정,%) : (04)3.8→(05)5.1, (1/4)2.9→(2/4)2.7→(3/4)4.3→(4/4)10.2

설비투자추계(%) : (04)1.4→(05)3.4, (05.11)6.6→(12)12.6→(06.1)0.1→(2)2.4, (1~2)1.2

* 건설투자(국민계정,%) : (04)1.1→(05)0.4, (1/4)△2.2→(2/4)1.6→(3/4)0.3→(4/4)0.9

건설가성(경상,%) : (04)11.1→(05)5.7, (05.11)11.3→(12)6.5→(06.1)2.5→(2)10.2, (1~2)6.2

□ (대외거래) 수출(통관)은 1/4분기중 두자리수 증가세 (11.0%, 일평균 10.8억불)를 지속

○ 다만, 유가 급등과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세(1/4분기 18.7%) 확대,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로 경상수지는 적자(2월 △7.6억불) 시현

* 수출(통관, %) : (05.1)18.3→(2)6.6→(3)13.1, (06.1)3.6→(2)16.8→(3)12.9

* 수입(통관, %) : (05.1)20.0→(2)5.3→(3)19.1, (06.1)17.3→(2)27.2→(3)13.0

원유수입 29.7 17.2 80.6 74.6 53.9 13.4

* 경상 수지(억불) : (05.1)38.8→(2)9.5, (06.1)0.9→(2)△7.6

서비스수지(억불) : (05.1)△8.6→(2)△9.7, (06.1)△16.4→(2)△18.2

□ (산업 및 서비스업 활동) 설 연휴 등으로 다소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으나, 1~2월 전체로는 증가세가 확대

* 산업생산(%) : (04)10.2→(05)6.3, (05.3/4)7.1→(4/4)10.3→(06.1)6.4→(2)20.0, (1~2)12.6

* 서비스업활동(%) : (04)0.6→(05)3.6, (05.3/4)5.4→(4/4)5.8→(06.1)6.9→(2)6.2, (1~2)6.6

□ (고용) 1~2월 취업자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6만명 증가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

* 취업자 증가(만명) : (05.1/4)14→(2/4)38→(3/4)38→(4/4)29→(06.1)39→(2)33, (1~2)36

□ (물가) 소비자물가 2%대 후반, 근원물가(석유류 등 제외) 1%대 후반의 하향 안정세를 지속

* 소비자물가(%) : (05.1/4)3.2→(2/4)3.0→(3/4)2.3→(4/4)2.5→(06.1/4)2.3

* 근원물가(%) : (05.1/4)3.0→(2/4)2.5→(3/4)1.9→(4/4)1.8→(06.1/4)1.6

□ (금융시장) 주가는 KOSPI 1300대, KOSDAQ 600대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으며, 금리는 하향 안정세

* KOSPI(기말) : (04)859→(05.6)1,008→(12)1,379→(06.2)1,372→(06.4.6)1,397

* KOSDAQ(기말) : (04)380→(05.6)503→(12)702→(06.2)682→(06.4.6)694

* 국고채(3년%,기말) : (04)3.28→(05.6)4.02→(12)5.08→(06.2)4.90→(06.4.6)4.96

○ 환율은 2월 이후 970원 내외에서 등락을 나타내 왔으나, 최근 들어 950원대로 하락

* 원/달러(기말) : (04)1,035→(05)1,012→(06.1)965→(06.3)972→(06.4.6)954

◇ 연초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금년 우리 경제는 잠재 수준인 5% 성장과 35~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전망

○ 특히, 이번 경기회복은 직전 회복기(2001~02년)와 비교할 때 수출과 내수의 균형 속에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

○ 다만, 가계소득 증가세가 크지 않고 저축률이 다시 하락하고 있어 안정적 소비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, 유가·환율 등 위험요인도 상존

* 가계소득(명목, %) : (01)6.1→(02)6.6→(03)4.4→(04)5.5→(05)3.5

가계소비(명목, %) : (01)10.0→(02)11.0→(03)2.1→(04)3.2→(05)5.8

* 가계 순저축률(%) : (01)5.9→(02)2.0→(03)3.6→(04)5.7→(05)3.9

3. 정책대응 방향

-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
 - 재정을 상·하반기 균형 집행하는 등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거시정책을 탄력 운용
 - 세계경제, 국제유가 등 국내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에 대응
-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
 - 서민·중산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 소득여건 개선에 노력
 -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8.31 정책 및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부동산시장 및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
 -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, 금융규제 혁신, 외환자유화 확대,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, '법과 원칙'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강화
 - 한·미 FTA 등 대외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일류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

-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, 덩어리 규제 등 규제개선과 함께 투자관련 세제·금융 지원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
- 중소·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 창업관련 규제 완화,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제도 개편, 구조조정 원활화 등을 추진
-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 확대를 통해 경쟁압력에 노출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
 - 금융, 법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고학력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
 - 의료·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문화·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다양화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
- 경제양극화에 대응한 동반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
 - 근로소득지원세제(EITC)의 도입 등 근로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하여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
 - 대·중소기업간 기술협력,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 등 상생협력 노력 강화

II. 주요 추진과제 현황

1. 한·미 FTA 추진

가. 추진 현황

- ☐ 정부는 03.8월 「FTA 추진 로드맵」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해 왔으며,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 추진
- ☐ 2.3일, 한·미 FTA 협상 출범 선언(한·미 통상장관)
- ☐ 3.6일, 한·미 FTA 1차 사전협의 개최

나. 한·미 FTA의 의의

- ☐ 한·미 FTA는 우리경제의 “생존 전략”임과 동시에 “제2의 장기 성장 전략”
 - 대외의존도가 70%를 넘는 우리 경제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맞서 범세계적 개방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형편
 - 한·미 FTA는 미·EU·중국·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FTA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대응전략의 핵심적 요소
 - 저출산·고령화 추세속에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배양하고 세계 최고와 겨루어 선진경제로 도약하고자 하는 시도
- ☐ 이러한 측면에서 한·미 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

다. 한·미 FTA의 기대효과

☐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통상압력 완화

* 세계수입시장 점유율(04년): 미국(21.8%), EU(역외 18.3%), 중국(8.0%), 일본(6.5%), 캐나다(4.0%)

☐ 한·미 FTA를 계기로 여타 국가와의 FTA 추진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, 노사관행 선진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

☐ 경쟁 촉진, 기술협력 강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

☐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

* 칠레의 경우 미-칠레 FTA 발효(04.1) 이후 국가신용등급 상승 (A- → A)

* 지난 6년간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일자리(53만명) : 전체의 20%

라. 한·미 FTA에 따른 대응방향

☐ 정부의 총 역량을 결집하여 협상에 대응

○ 「한·미 FTA 기획단」 설치 및 정부대표단 구성 완료
(23개 부처, 총 133명(3월말 현재))

○ 한·미 FTA 추진 및 점검체계 구축

- 한·미 FTA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격주 단위 운영

- 각 부처별 「한·미 FTA T/F」 운영체계를 마련,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

□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대책 강구

- 일차적으로는 협상과정에서 품목별·업종별 민감도를 감안,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
- 최종 협상결과가 가시화되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

마. 향후 추진계획

□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홍보

- 한·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의견 제출 요청(제출기간 : 3.9~4.28)
- 각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계 및 단체의 의견 수렴 (3~5월)
- 이해단체,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·미 FTA 홍보활동 진행(계속)

□ 금년 중 총 5회의 한·미 FTA 공식협상 개최 예정

- 6.5~9 제1차 공식 협상(워싱턴), 7.10~14 제2차 공식 협상(서울)

2. 부동산 시장의 안정

가. 추진 현황

- 지난해 말 8.31 정책 관련 14개 법률의 제·개정을 완료하여,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
- 실거래가 신고(06.1), 분양가 상한제(06.2)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·시행 중
 - 송파신도시 건설(205만평), 강북 등 도심광역재정비 등 공급확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
 - 다만,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*은 0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

* 06.6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, 06.7 주택분 재산세 부과, 06.9 토지분 재산세 부과, 06.12 강화된 종부세 부과, 07.1 강화된 양도세 시행

나. 「8.31 후속대책」 발표

-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불안 양상을 보임에 따라
 - 3.30일 8.31 부동산 정책 당시 논의에서 유보되었던 재건축 제도 합리화 방안과
 -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,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

<8.31 후속대책 주요내용>

①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

-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 확대(05년 19천호→25~30천호)
-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확대(05년 5천호→9천호 수준)
- 택지조성비 절감 및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
- 공공부문의 소형 및 중대형 임대주택 비축 확대

② 재건축제도 합리화

- 재건축 추진위원회 감독강화 등 재건축 투명성 제고
-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·기준 합리화
-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제도 도입

③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

-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
- 06.9월 시범지구 지정 등 강북광역재개발 가속화 등

④ 주택시장 안정방안

-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리스크관리 강화
- 취·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범위제한

다.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

□ 8.31정책과 금번 8.31 후속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

- 불합리한 부동산 관련 제도와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,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공고하게 확립될 것으로 전망
- 또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□ 향후 8.31 정책 및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

-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

3.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

가. 추진 배경

-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*과 제조업,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'고용을 동반하는 성장'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

* 취업유발계수(직간접 취업자수/10억원, 00년) : (서비스업) 24.3, (제조업) 14.4

- 「선택과 집중」의 전략적 접근방식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필요

나. 추진 방향

-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 「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아시아 선도국으로 도약」을 설정

*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발전하는 국가 및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구조의 선진화 도모

- 추진전략으로 Service-CORE전략*을 채택

* Competition(경쟁), Openness(개방), Regulatory reform(규제개혁), Enlargement & Specialization(대형화·전문화)

다. 중점 추진과제

-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

- 「선택과 집중」을 통해 집중 육성할 전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급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신규 유망서비스업*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 추진

* 모바일서비스, 전시·컨벤션산업, 고령친화산업, 패션서비스 등

□ 법률, 컨설팅, 디자인, 방송광고,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의
대형화·전문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

- 외국변호사 감독제도 수립*, 중소기업 대상 「쿠폰제 경영컨설팅」
제도 활성화**, 중장기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확충 등 추진

* 「외국법자문사법」을 제정(06년)하여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변호사
및 외국로펌의 등록, 자격요건, 사무소 설립요건, 명칭 등을 규정

** 예산지원 확대 : (05) 150억원(1,757개) → (06년) 186억원(2,000개 목표)

-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경영전문대학원 등을 활성화

* 06.3월 6개대학(경영), 1개대학(물류) 확정, 06.9월 또는 07.3월 개교 예정

** 금융전문대학원 설립(06.3월, KAIST 위탁)을 통해 연 200여명의 금융전문인력 양성

□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의료·교육서비스 발전 도모

-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
적정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

* 영리법인 허용, 의료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활성화 방안 검토

-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
도입,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추진

□ 해외에서의 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차세대 성장
동력산업으로 문화·관광·레저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추진

-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(태안, 무주, 영암·해남), 중·저가
관광호텔 브랜드의 개발 및 체인화를 차질없이 추진

- 한류와 연계한 문화컨텐츠(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를 통한
음식상품 육성 등)를 전략적으로 육성

□ 서비스시장 개방을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
계획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

*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급격한
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점진적·단계적 개방안을 마련

4.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추진

가. 추진 배경

□ 현행 자본시장관련 법령 체제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(IB)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

○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증권·파생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열거주의 규율체제로 인해 신종금융상품의 설계·판매가 제약

○ 증권, 선물, 자산운용업 별로 별도 법률이 존재하고 상호간 겸영을 금지하고 있어 대형화된 투자은행의 출현이 곤란하고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

○ 금융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체계의 수준이 낮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형성을 저해

⇒ 자본시장에 대한 규율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금융 빅뱅(Big bang)을 촉발시킬 필요

나. 추진 현황

□ 05.5월 학계, 법조계, 연구기관, 정부 등으로 T/F를 구성하여 영국·호주 등 해외입법례 연구·분석을 거쳐 통합법 제정 작업 추진

□ 06.2.17일 「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(가칭)」의 제정방안을 발표

□ 현재 은행·증권·보험 등 금융권역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

다. 통합법의 주요 내용

- ☐ 증권거래법, 선물거래법, 자산운용업법,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법을 통합
- ① 동일한 금융투자업무에 대해 영위 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업규제(진입, 건전성, 영업행위 규제)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
- ②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와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함
- ③ 증권업, 자산운용업, 선물업,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「금융투자회사」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
- ④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☐ 06년 상반기 중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실시
- ☐ 06년 하반기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

5. 재정제도의 선진화·효율화

가. 추진 현황

□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채 시장의 활성화 추진

-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장기 투자자산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채 시장 육성 추진

- 금년 1월부터 20년물 국고채를 도입하여 매월 발행중

* 06년 국고채 총 발행량의 10%수준(약 6.6조원)을 20년물로 발행

- 국채수요기반 확충·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채 원금·이자 분리제도 도입(06.3월)

□ 국유지의 관리강화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

- 국유재산 관리의 기초가 되는 국유잡종 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중 (05년말 총 70만 필지 중 25만 필지 완료)

- 위탁관리기관(KAMCO, 토지공사)을 통한 국유지 시범 개발사업*을 선정·추진중

* 남대문 세무서 부지, 대구 월평동 부지 등

나. 향후 추진계획

□ 재정운용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중장기·성과위주의 재정운용을 위한 기본 틀인 「국가재정법」 입법을 조속히 완료(04.10 국회제출)

-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 근거로서 「국가회계법」 제정 추진 (06년 중 법안의 국회 제출)

- 정부자금 운용의 단순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**재특회계와 공자기금을 통합*** (06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안 국회제출)

*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「특별회계·기금 정비방안」 (05.5.20일 확정)에 포함

□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

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**중장기적인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**
 - 국가채무의 위험분석 및 대응, 국가채무 상환계획 등 마련
- 국가채무 및 국채 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체계 구축 추진

□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

- **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를 06년까지 조기 완료**(당초 계획 07년) 하고 행정재산도 06년부터 관리청별로 전수실태조사 실시
 - *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이용현황 및 향후 활용방향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 매각·활용 계획 마련
- 국유재산 임대체계 정비, 국유재산 개발방식 다양화 추진

□ 국고행정의 투명화·효율화를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

-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 도입을 위해 **국가자산·부채에 관한 실사를 실시**(07년까지)하고 시범대상기관을 전부처로 확대
- **최저가 낙찰제 확대·시행** (500억원 이상 사전심사대상 →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) 등 계약제도 개선
- **조기결산체계를 정착***시켜 결산정보가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산의 환류(Feedback) 기능을 제고

* 정부결산 국회제출 시기를 단축(법상 9.2일)

: (03년결산)04.8.6일→(04년결산)05.7.27일→(05년결산목표)06.6월

6. 양극화 대응노력 강화

□ 양극화 완화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

-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의 근간으로 육성

* 중소기업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, 사회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등

-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과 함께, 고용안정센터 개편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

□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
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, 요양시설 확충, 노인 수발보험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확대
- 근로소득지원세제(EITC) 도입 추진,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 근로와 연계된 복지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

□ 저소득·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투자 및 능력개발기회 확대

-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, 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, 직업 훈련비 현실화,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등을 추진

□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

-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, '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'을 수립(06.상)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(06.상)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관리체계를 마련

7. 근로소득지원세제(EITC) 도입 추진

가. 추진 현황

-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EITC* 추진

* EITC는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

- 재정부(05.12)와 국세청(05.10)에 추진기획단 설치·실무 준비 중

- EITC 추진에 필요한 소득파악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·감면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(05년말)

나. 기대 효과

- EITC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이 증가되어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고,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 급여가 증가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며

- 소득파악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을 신고할 인센티브가 부여됨으로써 소득파악률이 제고되고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

다. 추진 계획

- 금년도에 우리 실정에 맞는 단계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가 08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

8. 외환시장의 안정

가. 최근 동향

□ 지난 두달간 안정세를 유지해온 환율이 최근 다소 흔들리면서 3.30일 이후 5 거래일 동안 20원 이상 급락

* 달러/원 : (3.30) 976.1 → (4.4) 963.2 → (4.5) 957.3 → (4.6) 953.5

○ 이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(5일 동안 약 1.4조원)과 공격적인 달러매도 등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과

○ 최근 경기호조 기대·3월 수출호조 및 기록적인 조선수주 호황 등의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

□ 금년 들어 대부분 아시아권 통화는 달러가치의 약세전망 전환*으로 인해 대부분 강세를 시현**

* 미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, 유로존과 일본의 금리인상 기대 등에 영향

** 06년중 절상율(4.6일 현재,%) : 한국(6.1), 일본(0.3), 대만(1.9), 싱가포르(3.7), 태국(7.1), 인도네시아(9.4), 필리핀(3.9), 중국(0.8)

	04말	05말	'06.1말	2말	3말	4.6(목)
원/달러	1,035.1	1011.6	964.6	970.9	971.6	953.5
100엔/원	1,009.7	858.5	821.2	835.3	827.7	811.5

나. 향후 대응방향

□ 정부는 국제수지 추이·외국인의 투자동향 등 국내 수급 요인과 글로벌 환율추세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

○ 환투기나 지나친 쏠림현상 등 의도적인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예정

○ 아울러 외환시장의 심화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노력도 병행

별첨 : 4월 臨時國會 處理 必要 法案

1. 소비자보호법 (개정)

* 법사위 계류 4.3일

2.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(개정)

* 법사위 계류 4.3일

3.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(개정)

* 법사위 회부 2.27일

4. 소득세법 (개정)

*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

5. 법인세법 (개정)

*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

6.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(개정)

*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

※ 전자금융거래법(제정), 국세기본법(개정), 국세징수법(개정)은
4.6일 본회의 의결

1. 소비자보호법 (개정)

□ 개정 이유

-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, 거래의 디지털화·세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정비 필요
- 일본·EU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반영

□ 주요 내용

- 「소비자보호법」 및 「한국소비자보호원」의 명칭 변경
 - * 소비자보호법 → 소비자기본법, 한국소비자보호원 → 한국소비자원
- 소비자안전·교육·국제협력 관련 규정 강화
- 「소비자단체소송」 제도 도입(대통령공약 관련)
 - 법정요건을 갖춘 일정 단체(소비자·사업자단체)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(2008년 시행)
- 소비자정책 기능조정 방안 반영, 정부안 수정요청(05.6)
 - 소비자정책의 총괄·조정 기능*은 재경부에서 수행
 - * 법령 소관과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,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
 - 소보원 감독 및 소비자단체 관련 업무는 공정위로 이관

□ 기대 효과

-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활성화,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

2.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(개정)

□ 개정 이유

- 법 제24조*는 확일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자동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점 발생
-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, 벌칙·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,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수단 미비

※ 제24조 :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(5%이상 +사실상 지배, 20% 이상) 소유하고자 할 때,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함

□ 주요 내용

-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 보완
- 금감위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,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
-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
- 시정조치권 신설(시정계획 제출 요구,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)
-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, 이행강제금 부과

※ [재경위 대안(법사위 계류중)의 경과규정] 개정법 이전, 금감위 승인 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처리

- ① 97.3월 이전 소유한 경우(예 :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 등)
- 한도초과분(5% 이상 소유한 주식)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,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(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)를 적용함

② 97.3월 이후 소유한 경우(예 :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소유 등)

- 한도초과분(5% 이상 소유한 주식)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,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함

□ 기대 효과

- 현행 승인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동 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

3.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(개정)

□ 개정 이유

- 지역특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사항을 확대하고,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주요 내용

- 『선 특구지정, 후 특구토지이용계획 심사제』 도입 등 지역특구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, 규제특례를 추가 확대 (종전 69개 → 94개)
- 국유재산법, 지방재정법, 주세법, 초·중등교육법 등 17개 법률에 따른 20개 일반 규제특례 추가
-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도시개발법,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5개 인·허가 의제 추가

□ 기대 효과

- 다양한 형태의 특화사업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
- 전국적 규제개혁에 앞서 지역적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

4. 소득세법(개정)

□ 개정 이유

-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기업자에 대해
 -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주요 내용

-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
 -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,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*
 - * 감가상각비, 기부금, 접대비,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 계산과 자산·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
 -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,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

□ 기대 효과

-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·표준화하여 납세편의 제고

5. 법인세법(개정)

□ 개정 이유

-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기업자에 대해
 -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주요 내용

-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
 -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,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*
 - * 감가상각비, 기부금, 접대비,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 한도계산과 자산·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
 -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,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

□ 기대 효과

-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·표준화하여 납세편의 제고

6.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(개정)

□ 개정 이유

-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을 명문화하여 과세의 투명성 제고
-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용역·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OECD 과세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

□ 주요 내용

-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을 명문화
- 05년말 개정된 법인세법·소득세법의 원천징수특례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
-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명시
-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·간접적으로 20%이상 보유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

□ 기대 효과

-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사태가 감소하고,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투명성이 제고되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
- 조세피난방지를 위한 세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되고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도 활성화